

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시송달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(거주불명 등록)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2. 23.

다 산 동 장 (인)



1. 제 목 :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
2. 공고기간 : 2019. 12. 23. ~ 2020. 01. 07. (14일 이상)
3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
4. 공고대상자

대 상 자		주 소	발 급 기 간	공고사유	비고
성 명	생년월일				
박*름	2002.12.29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	2020. 01. 01. ~ 2020. 12. 31	거주불명	

5. 신청장소 : 실거주지관할 읍면동사무소(주민등록재등록 후 신청가능)

6. 발급안내

- 1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(사진포함)
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직계혈족 또는 형제, 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 가능
- 2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.(3cm×4cm또는 3.5cm×4.5cm)
 -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,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기간 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담당자 : 서채원 (☎ 02-3396-6747)